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0262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0262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1. 3 선고 99나93602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AA (소송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BA)

【피고,상고인】 정CA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CB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BB)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3. 선고 99나936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보증약정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사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고 하겠으나, 그 때에도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이는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배DA이 1995. 11. 27. 액면 4,000만 원의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에 소외 DB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서CC의 배서를 받아 이를 원고로부터 할인하였고, 원고가 1996. 3. 11. 이 사건 수표를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96. 3. 29. 배DA과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위 피고로부터 위 수표금의 일부로서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배DA으로부터는 1996. 12. 30.까지 이 사건 수표금 잔액 3,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사실, 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자신의 처인 피고 정CA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정CA 소유의 서울 ○○구 ○○○○동 00-0의 216호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정CA으로 된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는 임차목적물의 구체적인 호수,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세보증금의 지급일자는 1997. 12. 31.로, 부동산의 명도일자는 1997. 12. 30.로 기재되고 전세기간은 계약체결일 훨씬 이전인 1988. 12. 30.부터 12개월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실제로 원고가 위 건물을 임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배DA이 1996. 12. 30.까지 위 3,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이 연대하여 1997. 12. 30.까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은

원고가 배DA으로부터 위 나머지 당좌수표금을 피고 서CC이 배D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 서CC의 사무실이 있는 위 건물을 실제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체결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 및 그 배척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면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서CC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피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영수증에 금액, 날짜, 발행인의 서명날인 외에 "차후 수표에 대한 책임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 서CC 사이에 위 문구의 내용과 같은 채무면제약정이 있었다는 피고 서CC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면서 위 영수증의 채무면제 문구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위 영수증을 교부한 이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원심판결에는 위 영수증의 변조에 관한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 영수증의 채무면제에 관한 문구가 사후에 변조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배척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강신욱 강신욱